

## —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'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'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# 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 계약서
- 납부기한·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  
 \*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### 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· 우체국 ·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### ■ 가산세 개정사항 ('21.1.1. 부터 적용) · 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'21.1.1부터 개정된 인지세법과 관련하여 인지세 15만원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)을 납입하시고 정부수입인지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기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■ 만일 미납부 또는 영수증을 분실 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 최고 300%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납부 후 정부수입인지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(소인처리 불필요)하시기 바랍니다.

## — 인지세 (수입인지)구매행법

### 온라인 이용방법

1.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,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3. 구매(납부정보 입력) ※ 00:30 ~ 22:00 동안 구입 가능

구분	내용
용도	인지세납부
과세문서 종류	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금액	150,000원
건수	1건



4. 출력 ※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오프라인 이용방법

1. 우체국 · 은행 방문(방문전 문의 요망)
2.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3. 수입인지 발급